

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1. 개정이유

-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함

2. 주요골자

-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(제5조제1호)
- 당연직 위원중 시의회 총무위원장을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직위 명칭변경(제8조제3항)
- 장학금 지급정지 조항중 “학업성적이 불량할때”란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삭제(조례제13조제1항제1호)

3. 참고사항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(2000. 10. 1)
-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 참조[기획11250-828(2000.11.9)]

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중 “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중 “총무위원장”을 “기획행정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“제2호 및 제3호”를 “제1호 및 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(생략) 1. <u>생활보호대상자</u>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2 ~ 3 (생략)	제5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(현행과같음) 1. <u>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</u> ----- ----- 2 ~ 3 (현행과 같음)
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② (생략)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,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<u>총무위원장</u>, 기획정보실장, 행정지원국장, 경제진흥국장, 도시건설국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,관리,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④ ~ ⑥ (생략)	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<u>기획행정</u> <u>위원장</u>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장학금 지급정지) ① (생략) 1. <u>학업성적이 불량할 때</u> 2. (생략) 3. (생략) ② (생략)	제13조(장학금 지급정지) ①(현행과같음) <u><삭제></u> 1. (현행제2호와 같음) 2. (현행제3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